

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50호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3. 12. 12 : 성재윤의원 외 4인 발의
- 나. 2003. 12. 12 : 운영위원회 회부
- 다. 2003. 12. 19 :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상정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(2003.12.13)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 지급경비가 인상됨에 따라 이를 재조정하려고 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함(안 제2조 제2항)
 - 월 55만원이내 → 월110만원이내(55만원증액)
- (2) 지방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범위를 그간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 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 함(안 별표1 및 별표2)
 - (가) 국내여비(숙박료)
 - 의장·부의장 : 41,000원 → 46,000원(5,000원 증액)
 - 의원 : 22,000원 → 25,000원(3,000원 증액)
 - (나) 국외여비
 - 1) 일비
 - 의장·부의장 : 25\$ → 35\$(10\$ 증액)
 - 의원 : 20\$ → 30\$(10\$증액)
 - 2) 숙박료
 - 의장·부의장 : 130\$~72\$ → 166\$~92\$(36\$~20\$ 증액)
 - 의원 : 114\$~46\$ → 145\$~62\$(31\$~16\$증액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정한용)

-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원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 시 인상된 금액 범위내로 지급하기 위하여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이나 자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: 없음